

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명세서

청구인 (수급자격자)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최종 폐업사업장명	최종 폐업일	년	월	일
수급자격신청일	수급기간만료일			

소정급여일수 산정

피보험기간 합산 내역

자영업자	연번	사업장명	피보험기간(보험료 납부 기간)	합계
	1			일
	2			
	3			

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	연번	사업장명	피보험기간(고용기간)	합계
	1			일
	2			
	3			

총 피보험기간

총 소정급여일수	일	자영업자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	일
		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합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추가분	일

급여 기초일액 산정

기준보수액	기간	기준보수 등급	금액	합산금액

급여 기초일액

(기준보수 합산금액 ÷ 총 피보험기간)

근로자·예술인·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 합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추가분에 대한 급여 기초일액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62조제5항 및 제93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직인

공지사항

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통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